

제 30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2021. 6.

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양민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라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외국인들은 여러 교육지원 혜택에서 소외될 뿐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편적 유아교육과정을 위한 누리과정 비용 까지도 전액 자부담하고 있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다문화교육 사업을 역량과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다문화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사업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사업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교육 현장에서 만կ은 외국인 자녀가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